0. 입주자 모집공고문 수정 안내

“용인 테크노밸리 리메인시티”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오니, 청약 전 수정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① 수정내용: 입주자 모집공고 5페이지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등“ 부분의 재당첨 제한 내용 삭제(당 사업지 재당첨제한 해당없음)

② 변경 전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등

- 전매금지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당첨된 계약세대의 경우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1.07.28.)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재당첨 제한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향후「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도시형생활주택는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당첨일부터 7년간 재당첨 제한

③ 변경 후

■ 분양권 전매 제한

- 전매금지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당첨된 계약세대의 경우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용인 테크노밸리 리메인시티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안드로이드 아이폰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용인 테크노밸리 리메인시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견본주택 (https://www.remaincity.com)과 병행하여 운영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 안내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는 일자별,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유선예약 이후 예약 일자, 시간에 견본주택을 관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공급계약 체결은 견본주택에서 진행 예정이며, 당첨자 대상 공급계약 일정 및 방법은 개별 안내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소독제 및 비접촉체온계 사용 거부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한 경우
- 비접촉온도계 및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체온 확인 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시행위탁사가 고지한 기간 및 운영시간 외,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공급계약 체결 등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031-332-1800) 및 청약홈 콜센터 (1644-7445)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하오니 신중히 고려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에 당첨되시어 계약하는 경우 당첨자 본인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 해당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지역 (경기도 용인시)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입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 제1항 및 제59조의 규정만을 적용합니다.

■ 본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공급을 실시하지 않고 공급 대상세대 전체를 일반공급으로 분양합니다.

■ 본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제57조 동 규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건축물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지상권(地上權)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본 건축물은 경기도 용인시청 건축과-14710 (2021.07.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2020-건축과-신축허가-61. 2020. 11. 27.)

■ 공급 대상물

- 공급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1267-8, 9번지
- 대지면적 : 2,956.90 ㎡
- 건축물 연면적 : 22,482.22 ㎡
- 규모 및 용도 : 지하4층, 지상13층 중 4층~13층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76세대
 [※공급대상 외 현황 : 업무시설(오피스텔) 16실 및 근린생활시설]
- 총 공급규모 : 22,482.22㎡중 도시형생활주택 14,719.92㎡
- 주차대수 : 총 242대 (도시형생활주택 180대, 오피스텔 16대, 근린생활시설 46대)

■ 준공예정일 : 2023년 05월 예정 (정확한 준공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예정일 : 2023년 0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0.218g** 입니다.

■ 공급대상 및 공급면적

(단위 : ㎡, 세대)

구분	청약군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 기준)	약식표기	세대 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도시형 생활주택	1군	2021950044	19.69A	19A	19.6900	9.2400	28.9300	2.6800	17.9400	49.5500	6.3800	171
			19.97B	19B	19.9700	9.3600	29.3300	2.7100	18.1900	50.2400	6.4700	9
			19.97C	19C	19.9700	9.3600	29.3300	2.7100	18.1900	50.2400	6.4700	54
	2군		25.71D	25D	25.7100	11.8500	37.5600	3.4900	23.4200	64.4800	8.3300	32
	3군		40.86E	40E	40.8600	17.5400	58.4000	5.5500	37.2300	101.1800	13.2400	8
			42.40F	42F	42.4000	18.1400	60.5400	5.7600	38.6300	104.9300	13.7400	2
	합 계											276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청약군	주택형	라인별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2021-12-21	2022-03-21	2022-06-21	2022-09-21	2022-12-21	2023-03-21	
1군	19.69A	8호~16호	4층~5층	18	17,149,245	121,650,755	138,800,000	13,880,000	13,880,000	13,880,000	13,880,000	13,880,000	13,880,000	13,880,000	41,640,000
			6층~9층	36	17,149,245	125,950,755	143,100,000	14,310,000	14,310,000	14,310,000	14,310,000	14,310,000	14,310,000	14,310,000	42,930,000
			10층~12층	27	17,149,245	130,450,755	147,600,000	14,760,000	14,760,000	14,760,000	14,760,000	14,760,000	14,760,000	14,760,000	44,280,000
		17호~26호	4층~5층	20	17,149,245	124,150,755	141,300,000	14,130,000	14,130,000	14,130,000	14,130,000	14,130,000	14,130,000	14,130,000	42,390,000
			6층~9층	40	17,149,245	128,750,755	145,900,000	14,590,000	14,590,000	14,590,000	14,590,000	14,590,000	14,590,000	14,590,000	43,770,000
			10층~12층	30	17,149,245	132,750,755	149,900,000	14,990,000	14,990,000	14,990,000	14,990,000	14,990,000	14,990,000	14,990,000	44,970,000
	19.97B	1호	4층~5층	2	17,391,162	118,508,838	135,900,000	13,590,000	13,590,000	13,590,000	13,590,000	13,590,000	13,590,000	13,590,000	40,770,000
			6층~9층	4	17,391,162	123,208,838	140,600,000	14,060,000	14,060,000	14,060,000	14,060,000	14,060,000	14,060,000	14,060,000	42,180,000
			10층~12층	3	17,391,162	127,608,838	145,000,000	14,500,000	14,500,000	14,500,000	14,500,000	14,500,000	14,500,000	14,500,000	43,500,000
	19.97C	2호~7호	4층~5층	12	17,391,162	122,608,838	140,000,000	14,000,000	14,000,000	14,000,000	14,000,000	14,000,000	14,000,000	14,000,000	42,000,000
			6층~9층	24	17,391,162	127,608,838	145,000,000	14,500,000	14,500,000	14,500,000	14,500,000	14,500,000	14,500,000	14,500,000	43,500,000
			10층~12층	18	17,391,162	132,108,838	149,500,000	14,950,000	14,950,000	14,950,000	14,950,000	14,950,000	14,950,000	14,950,000	44,850,000
2군	25.71D	27호~30호	4층~5층	8	22,390,786	155,609,214	178,000,000	17,800,000	17,800,000	17,800,000	17,800,000	17,800,000	17,800,000	17,800,000	53,400,000
			6층~9층	16	22,390,786	161,009,214	183,400,000	18,340,000	18,340,000	18,340,000	18,340,000	18,340,000	18,340,000	18,340,000	55,020,000
			10층~12층	8	22,390,786	166,809,214	189,200,000	18,920,000	18,920,000	18,920,000	18,920,000	18,920,000	18,920,000	18,920,000	56,760,000
3군	40.86E	3호~5호	13층	3	35,588,716	268,411,284	304,0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91,200,000
		6호~10호	13층	5	35,588,716	268,411,284	304,0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91,200,000
	42.40F	1호~2호	13층	2	36,932,701	278,067,299	315,0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94,500,000

※ 본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품입니다.

■ 공통사항

- 면적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x0.3025 또는 형별면적(㎡)/3.3058)

- 상기 타입별 설계도서는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2에 위치한 견본주택 내 비치되어있으니 방문하시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실별 공급금액은 별도의 안내책자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주택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상기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금액은 각 세대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실 당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관리실(MDF, 방제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각 실별로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되어 있으며,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본 주택은 발코니 확장 공사가 기본적으로 일괄 시공될 예정으로 해당 공사비용은 상기 분양가격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 이와 달리 개별적으로 발코니 미확장 선택을 이유로 상기 분양가격 중 해당 공사비용 상당의 감액이나 할인을 요청할 수 없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 품목 가격이 미포함 되어 있음.
- 추가선택 유상옵션 계약을 체결한 세대는 별도품목 공급금액의 중도금, 잔금(미납이 있을 경우 연체료 포함)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가 제한될 수 있음.
-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하며, 실입주는 잔금 및 중도금의 완납이나 잔금의 완납 및 중도금에 대한 대출원금 잔액 상환 후 가능합니다.
- 대지지분은 용도별 연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대지면적을 각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였으며,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하되,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함.
- 상기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대지 및 선택품목 관련 제세공과금과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은 입주자 잔금납부 시 정산할 예정임.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본 사업부지 (자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가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견본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 C타입이 설치되 있으므로, 설치되지 않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카다로그 및 분양상담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전에 평형,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제공품목은 일반분양자를 위하여 건립한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재 사양 및 견본 주택에 비치된 카다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타입을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다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으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음.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호수에 따라 발코니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음
- 기본 제공품목으로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에 시공되는 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별도의 실외기를 세대 내외부에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Ⅱ 청약 신청 및 유의사항

■ 청약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7. 27) 현재 만19세 이상인 개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 본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방법 : 층별, 호별 구분없이 군별로 접수 받고 추첨 결과에 따라 타입, 층별, 호수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 각 군별로 1인당 1건의 청약이 가능하며, 각각의 군별로 청약할 경우 1인 최대 3건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단, 동일인이 동일 군에 2건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은행 창구를 통한 직접 접수시는 대행은행인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호수는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군 별 무작위 결정됩니다.
- 본 도시형 생활주택은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하지 않으며,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습니다.
-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당사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 전매금지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당첨된 계약세대의 경우「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청약 일정 및 장소

구분	청약 신청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시	2021년 8월 6일(금) 08:00~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 영업시간까지)	2021년 8월 11일(수) 16시 이후	2021년 8월 12일(목) 10:00~16:0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군별 무작위 결정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용인 테크노밸리 리메인시티 분양홍보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2)	

- 당첨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이 경우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우리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군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거주자 우선분양 선택(선택사항), 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용
모든 군 공통	1,000,000원 (금일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 (우리은행 전 지점)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구비사항</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우리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신청시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도시형생활주택 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td></tr>
<tr><td>법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우리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추가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법인 신청 시 구비서류 외에 직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위임장(신청접수 장소 비치) 지참</td></tr>
</table>

※ 창구접수는 대행은행인 우리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하며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제출한 환불신청 계좌가 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의 제출로 인한 환불지연, 미지급 등의 상황이 발생될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군별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하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1년 8월 11일(수) 16:00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동.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군 내에서 타입·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청약시 유의사항

- 용인 테크노밸리 리메인시티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2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견본주택에서 직접 확인하여야하며, 전화문의는 응답하되, 대화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발생분에 대해서는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청약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 지정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시행위탁사에서 임의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후 부득이하게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지정된 납부일 (중도금은 공급계약서 지정일 또는 잔금은 별도 지정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급계약서 참조)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및 부동산 중개업자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 지구 내 시설물의 변경과 업무, 분양시설의 배치, 구조 및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주변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시설에 개설업종이 지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조경시설, 외부 시설물의 종류와 위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시설물의 설치에 따라 소음, 환경저하, 동선의 혼선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 경미한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를 진행할 때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인쇄물, 조감도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각종 평가심의 및 현장 여건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서, 안내문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지하철, 관공서,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도로망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 시공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자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Ⅲ 계약 일정 및 유의사항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1년 8월 12일(목)	10:00 ~ 16:00	용인 테크노밸리 리메인시티 견본주택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2)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포함) 납부시 본 입주자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 입주자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새마을금고	9002-1956-9702-3	㈜무궁화신탁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601호" 당첨자 홍길동" → 0601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급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공급)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사항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주민등록등본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3통 (용도 : 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 및 인감도장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신청시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도시형생활주택 계약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계약장소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법인 신청 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3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대표이사 본인 방문시 대표이사 신분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지참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직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신청접수 장소 비치) 지참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함.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지정 계약기간내에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시행위탁사에서 임의 공급합니다.
※지정된 납부일 (중도금은 공급계약서 지정일 또는 잔금은 별도 지정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층,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자(수분양자)는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제반 유의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가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등은 건축 허가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배치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을 따릅니다.
- 2020년 7월 08일 개정 시행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분양계약시에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이 계약할 경우(국내 토지를 취득 할 때) 아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주택 구입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 외국환 유입에 따른『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 영리목적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법』,『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시행위탁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계약자(수분양자)가 금융기관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도시주택보증공사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출조건은 금융기관 대출자격 조건이 되는 계약자에 한하며 대출불가시 '계약자 본인 책임'으로 납부해야 하고, 대출 불가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됨.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의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됨.
- 하자보수 절차는『공동주택 관리법』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됨.
- 하자 판정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함.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지정 개시일 약 1개월 전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마감재 및 가구 등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방문을 진행할 예정임.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 안내를 통해 공지할 예정임.

■ 입주 예정일 : 2023년 08월 예정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실입주기간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을 실입주기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기간이 입주 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주 지정기간에 함께 납부하여야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지상 12층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될 예정임 (부대시설 면적은 용도별 전용면적비로 산정함)

Ⅳ 추가 선택 품목

■ 의류 관리기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 위치	적용사항	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	비고
				계약시	2022-03-21	입주시	
A,B,C,D 타입	붙박이장 옆	LG전자 S3MFC 블랙미러형	1,400,000	140,000	280,000	980,000	계약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계약시 견본주택 확인 필요)
E, F 타입	침실1 붙박이장 옆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 납부계좌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시행위탁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옵션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최초 옵션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01홍길동'으로 기재)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플러스 옵션 선택 품목 납부계좌	새마을금고	9002-1967-2919-5	㈜무궁화신탁

■ 플러스 옵션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동등 수준의 다른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플러스 옵션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V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공통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시행위탁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본 건물은 주상복합건물로서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와 공동으로 사용함. • 본 건축물은 용인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덕성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내의 산업시설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시설여건 미비 등으로 인한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며 향후 산업시설의 건설, 당해 지구의 관리기본계획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공급시설이므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계약자는 주민공동시설 면적외의 시설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수량과 바닥, 벽 마감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시행위탁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대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착공후 현장에서의 여건이나 지반현황 등의 상동에 따라 구조, 성능상품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 분양사업자는 대통령령에 따른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 변경으로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분양 받

	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하며, 동의 및 통보의 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른다. •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훼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청약 당첨자 및 계약자는 입주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주민등록등본 포함)을 시공회사로 필히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로 인하여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부상 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또는 실측정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건물의 명칭, 외부색채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은 향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내, 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광역교통 및 철도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또한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실내, 외 공용부부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 본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아니므로『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등에 관한 규칙』관련 감정평가 대상이 아님 • 본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비 가산비용 인정받은 공동주택 성능에 관한 사항은 해당없음. • 본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아님.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C타입만 설치되며 견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은 도시형생활주택 대해서는 카다로그 및 분양상담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형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선택옵션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위치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 창호는 본 공사시 업체,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 가구류(침대, 소파 등), 생활 가전류(밥솥, TV등), 침장 및 커튼류 및 기타 전시용품 등은 입주시에 제공되지 않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연출용입니다.(분양가에 미포함됨)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세대, 부대시설모형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분양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사오니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실 시공시 소방법령에 따라 설치 예정임.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절, 생산중단, 품귀, 특허분쟁, 제조회사(수입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다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단지내 포장재 및 포장패턴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다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광역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조경도, 단지모형, 각 타입별 단위실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건축허가도서 및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인지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 견본주택, 홍보 카다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망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양홍보물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기된 주변개발 조성계획(산업단지, 도로망 등 각종시설 포함)은 각각의 개발 주제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타입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 본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음. (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본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설계 및 단지 내부여건	• 지하 주차장 출입부분 및 주차통로 유효높이는 h=2.3m이고, 지하주차장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h=2.3m로 시공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 주차장은 용도별로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구역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 2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세대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저층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및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 조경 및 위치에 따라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만을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건축, 기계, 전기 등)은 옥상 녹화와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안내하는 실내의 위치에 계약자가 설치를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이 폭, 높이 등의 협소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옥상점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부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가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경관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하며, 일부 실은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사용자에 의한 불법 구조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호실이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 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물의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는 통풍성 증대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형태 및 재질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상 기계/전기실/급배기구/쓰레기집하장 등 인접실에는 냄새, 소음,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 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 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물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등의 설치로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계획은 실시설계시 높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와 단지계획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건물 주차장 출입구의 가·감속차로의 형태는 인허가 진행상 변경될 수 있음. • 옥상 및 옥탑의 디자인 형태는 본 공사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 무인택배 보관소는 지하 1층에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에 따라 동선 차이가 있으며, 위치 및 설치대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건물 지상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세대 및 인접 세대는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건물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고,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상업시설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본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난방임. •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세대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건물 옥탑에 TV공청 안테나(1개소, 전파방향기준) 및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소방법 및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물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지침 및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여 건물 동측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이로 인한 차량통행에 의해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지상 비상차량주차, 문주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의 이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및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지상이나 지하에 기계/전기실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붙박이장류 (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의 벽, 바닥, 천장의 최종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마감재로 사용되는 마루 및 벽지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 시공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은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적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발코니 확장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저층부 상가동 및 건물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후 분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은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각지자체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조례 및 관할 부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예정임. • 본 도시형 생활주택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대지 동측에 지구단위지침에 의한 대지내 공공조경이 설치됨. • 건물 12층 동측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로 이용에 따른 간섭, 진동,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지하층에 기계실, 저수조, 저류조, 전기실, 발전기실 등 설치로 진동,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진능력을 공개합니다. (단, 추가지반조사 및 실시설계를 통해 지반종류 및 내진설계범주, 반응수정계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진구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 계수(IE)	내진설계범주	건물중요도	반응수정계수(R)
0.176 (지진구역 I)	S2	1.2	C	1급	5.0

• 본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건축구조기준(KDS 41 : 2019)에 따라 메르칼리 진도(MMI)등급 VII-0.218g 이며, 최대유효지반가속도는 0.176(g)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실시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V 기타사항

▣ 용인 테크노밸리 리메인시티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구분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 까지	29,993,880,000	01292021-104-0002200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등록업자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등록번호 : 서울 090057)
- 공사의 착공, 준공 및 공급 예정일 :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시 개별등기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규모
 - 소재지 및 지번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1267-8,9
 - 지목 : 대
 - 용도 :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 규모 : 지하4층 ~ 지상13층
- 사업방식 :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2020년 11월 27일 용인시청 건축허가 취득 (2020-건축과-신축허가-6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 성장관리권역

■ 사업관계자 안내

구 분	회 사 명	주 소	연락처	비고(법인등록번호,사업자번호)
시행위탁자	㈜이안이앤디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중노장길 106-24	031-339-0022	110111-4252112
시행수탁자	㈜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타워역삼)	02-3456-0000	110111-2867418
시공사	삼정건설산업(주)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121, 3층 313호 (가산동, 에이스가산타워)	02-6954-1810	120111-0758477
분양대행사	백산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평4길 10-7	031-338-9617	124-43-68190
설계자	조영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04길 6, 601호 (역삼동, 영동빌딩)	02-567-0572	211-09-40264

■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사업기간 중 수분양자의 관리보호 및 안전한 사업진행만을 목적으로 시행위탁자인 ㈜이안이앤디, 시행수탁자인 ㈜무궁화신탁 그리고 시공사인 삼정건설산업(주)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근거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한 일체의 시행관련 의무(분양대금의 수납 및 관리, 분양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분양대금 반환과 수분양자에 대한 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 소유권이전 관련업무, 입주지연 지체상금 등 관리형토지신탁계약상의 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함)에 대한 이행 및 책임부담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인 ㈜이안이앤디에 있으며, 시공관련 의무(책임준공, 사용승인, 하자보수 등 관리형토지신탁계약상의 의무를 포함)에 대한 이행 및 책임부담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시공사인 삼정건설산업(주)에 있음.

●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시행수탁자 ㈜무궁화신탁이 매도인(분양자)의 지위에서 수분양자와 체결하는 것으로서, 수분양자는 매도인의 책임 및 의무가 시행위탁자인 ㈜이안이앤디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시행수탁자인 ㈜무궁화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거하여, 현존하는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그 책임을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시행수탁자를 상대로 매도인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 사업부지(향후 준공예정인 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해제나 해지(일부세대의 소유권이전 포함) 등의 사유로 시행위탁자인 ㈜이안이앤디와 시행수탁자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시행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책임부담은 시행위탁자인 ㈜이안이앤디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시행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권리의무 및 책임부담은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자인 ㈜이안이앤디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됨

● 모든 분양수입금은 신탁계약에 의거 (주)무궁화신탁 명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납입되어야 하며, (주)무궁화신탁 명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분양대금 반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주)무궁화신탁이 신탁부동산을 환가처분하는것에 매수인이 사전동의한 것으로 봄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 분	건축감리	구조감리	토목 굴토감리	통신, 전기, 소방, 기계 감리	비고
감 리 자	에이디건축사사무소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에이스	㈜세한이엔씨	세원엔지니어링(주)	
계약금액	319,000,000원	19,250,000원	29,700,000원	236,500,000원	부가세 포함

■ 분양홍보관(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2, 103호 (김량장동, 수빌딩) (분양문의 전화: 031-332-1800)

■ 현장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1267-8, 9번지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s://www.remaincity.com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업장(견본주택)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